#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 결

사건 2023고단1541 사기, 횡령

피고인 A (<주민등록번호>), 일용노동자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검사 김효준(기소), 석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미화(국선)

판결선고 2023.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1. 사기

피고인은 12.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상환할 것이고, 500만 원의 이자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금을 모두 2020. 1. 29.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식이 잘 되고 있다. 자금이 더 필요한데 돈을 좀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돈을 빌려 주식 에 투자를 하는 등 무분별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대로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매월 급여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4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위 기존 대출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2020. 1. 29.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10. 31.경 위 차량을 ㈜B모터스에게 3,25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5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 주식 매수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확인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상태 확인 등 피해금 차용 시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달,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 합계가 5,900만 원에 달하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202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